

사법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좌담회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5:50

장소 | ZOOM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패널 | 성창익 변호사 (좌장, 사법센터 소장)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임지봉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 상임이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프로그램 ◆

14:00 - 14:05 개회사 (성창익 소장), 축사(김도형 회장)

14:05 - 14:20 사법센터 활동 경과 등 보고 (최용근 부소장)

14:20 - 14:30 소위원회 소개 (각 소위원장)

14:30 - 15:30 좌담회

좌장: 성창익 변호사 (사법센터 소장)

패널(가나다 순):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 상임이사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15:30 - 15:50 온라인 플로어 토론

15:50 폐회

사법센터 경과보고

2021. 3. 19.

변호사 최용근(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1. 사법센터 설립 경과

- 민변은 1987년 모임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률가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로서, 다양한 사법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운동을 펼쳐 왔음.
- 민변은 1987년 모임 발족 이래, 특별위원회 사법제도분과를 설치(1988년)하여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응해 왔음. 이른바 2차 사법과동 시기 소장 법관들이 발표한 법관성명(‘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고(1988. 6.), 영장실질심사제의 전면적 실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재정신청 대상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1992. 5.)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 이후 법제분과(1992년), 법제사법위원회(1994년), 사법위원회(1996년), 사법개혁특별위원회(1999년), 사법위원회(2000년)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사법개혁 과제에 대응해 왔음.
- 2010년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국정원과 구 기무사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에 의한 다수의 인권침해사례 등 일련의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징하게 드러났음.
- 촛불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법개혁의 성과는 미미함 ; 법원행정처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기무사의 개혁 등이 시도되었고 그 중 일부는 시행되었으나, 본질적 또는 완전한 개혁에 이르지 못하였음
-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실제로도 잘 할 수 있는 영역임 ; 나아가 사법개혁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통된 요청도 매우 강력함.
- 민변은 사법개혁 과제의 대응을 위한 내부적 필요와 외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과제를 포괄적으로 감당할 별도의 조직 구성 논의를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왔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민변 제13대 집행부는 2018. 5. 총회에서 ‘사법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정책기능의 강화’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결정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하여 장기과제로 ‘사법정책센터’의 설치를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였음.

- 사법센터 설립 이전까지 민변의 사법개혁 대응은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아니함 ; 그러나 ① 사법위원회가 민변 내의 15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됨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회원들이 쉽게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② 현실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 개혁 관련 논의는 일회적으로 사무처에서 관여하는 등 (준)사법기관에 대한 대응 통로가 사법위원회로 일원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였으며, ③ 사법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 대응을 월 1회의 모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법위원회의 틀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
- 이러한 정세·민변의 역할·현실에서의 제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위한 체계적 정책연구·감시·대응활동을 위하여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사법센터”를 구성하는 안이 2019. 5. 민변 제32차 총회에 제출·승인되었으며, 일응의 준비 절차를 거쳐 2020. 2. 27. 공식 출범하게 되었음.

2. 사법센터 구성

- 사법센터는 기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같은 별도의 상설 조직으로 신설하였음.

○ 소위원회

- 사법센터 산하에 법원/헌재 등 사법(법원)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한 법원개혁소위원회, 수사기관의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한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국정원 개혁·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 포함)·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개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각 설치
- 소위원회는 각 기관별 이슈(입법/판례모니터링 포함)를 전담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성을 축적

○ 운영위원회

- 월 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센터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 복수의 소위원회에 관할이 중첩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실행

○ 현재 사법센터 집행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소장: 성창익, 부소장: 최용근, 상근변호사: 조영관
-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서선영, 간사: 조세현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김지미, 간사: 이창민
-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장유식, 간사: 이주희

3. 사법센터 활동 보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입법을 환영하고, 국회에 법원개혁 과제의 입법 완수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 / 2020. 3. 12.
-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법(법원)개혁 5대 과제 제안서 발표 / 2020. 3. 24.

■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삭제 /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 합의제 기구를 통한 사법행정 (가칭 '사법행정 위원회' 신설)

■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방식 개선 등) / 최소 50명 이상으로 대법관 증원

■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사실심 충실화 (법관 증원, 전문법원 도입, 문서제출명령제도 개선 등) / 약식명령 선고 후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도입 /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폐지 / 인지제도 개선 (소송물에 따른 인지액 책정, 심급 연동형 인지대상항제 폐지 등) / 소송비용부담의 개선 (공익소송 소송비용부담 감면제도 도입 등)

■ 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평가확대(실질화)

미확정 판결 전면 공개 /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도입

■ 비위 판·검사 탄핵 및 징계

신속한 탄핵소추 / 징계제도 개선 (징계청구권자 확대 및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밀행적 상고제도 논의를 비판하고 공개적인 진행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 2020. 5. 13.
-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8.
-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공동주최: 민변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2020. 7. 7.
- 권력기관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 내용 중 검찰 및 경찰 개혁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 발표 / 2020. 8. 3.
-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에 맞추어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추궁과 관여법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 2020. 9. 7.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 2020. 9. 10.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법무부 제출 / 2020. 9. 16.
-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

- 은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 발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 2020. 9. 29.
- 헌법상의 사법권을 사법행정권과 동일시하는 법원 인식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원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 개최(공동 주최: 민변 사법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2020. 10. 14.
 -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는 논평 발표 / 2020. 11. 13.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 절차를 포함한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 추궁과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 2020. 11. 17. , 2020. 11. 23.
 - 민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 발표 / 2020. 11. 23.
 -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이슈리포트] 발표 / 2020. 12. 2.
 - 공수처 출범을 맞아 공수처의 본령에 충실한 활동을 당부하는 논평 발표 / 2021. 1. 21.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 2021. 1. 28.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 소추 의결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는 논평 발표 / 2021. 2. 5.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평 발표 / 2021. 3. 4.
 - 국가수사본부가 그 설립 취지를 충실히 살려 활동할 것을 당부하는 논평 발표 / 2021. 3. 4.
 - 기타 사법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기자회견, 토론회 등 참석
 -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지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경찰개혁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

4. 향후 활동계획

- 법원개혁소위원회
 - 상고제도 개선과 연결된 문제로서 하급심 강화 관련 연구 및 활동(판사 증원 포함, 법원 예산에 대한 적극적 입장 필요): 바람직한 상고심 개혁 방향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간
 -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관련: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논의, 법관 평가, 전문법원 추가 설치 및 우선순위, 1심 단독 확대 방안
 - 법원장 호선제(현재 추천제 시범실시중) 도입(법원조직법 개정의 문제)
 - 개혁입법과제 관련: 법관징계제도 개혁(사법농단 관련 활동과 연결), 대법관후보추천절차의 개선(차기 대법관 교체전)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 규모 확대(최소 1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준 -검사 30명 이상 50명 미만, 수사관 50명 이상 70명 미만), 수사대상 범위와 기소대상 범위의 일치
-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1차적 수사권 보유 범위 축소, 장기적으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
-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경찰법 등 개정):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 불가역적인 법무행정의 탈검찰화, 전문화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개정): 법무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 겸임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담당관 정부변호사 개방직 임용 등 전문화된 인력 운영
-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충실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 (형사소송법 개정): 재정신청제도의 확대(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 사건), 공소제기결정 이후 공소유지제도변호사 제도 도입

○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소속 전문가형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 경찰의 정보기능 최소화 및 정보경찰 폐해 방지: 정보경찰 폐지,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상 '치안정보' 관련 규정 삭제